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2. 16 선고 2020가단11138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1. 2. 3.

판결 선고 2021. 2. 16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7 지분에 관하여 2020.2. 21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7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3. 9. 접수 제29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21. 체결된

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란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, 제257조)1)

3. 일부 기각 부분

원고는,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20. 2.21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였으나, 위 분할협의 중 D의 상속분 2/7지분 부분만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,원고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 청구 중 D의 2/7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.

판사 이정아

별 지 목 록

1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

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

위 지상

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

주택

77.4㎡

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

창고

11.4㎡

부속건물

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

창고

4.0㎡

[]의 상속지분 7분의2 지분 전부

2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

대 175.9㎡

[]의 상속지분 7분의2 지분 전부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사이의 관계

가. 원고의 지위

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

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.

나.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채권양도통지

E 주식회사와 소외 F 주식회사는 채권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, 다시

A 주식회사와 체결된 자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무(채권채무)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, 위 채권양도사실에 대하여 채무자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.

양도양수일: 2017년 10월 26일(자산확정일 2017.09.30.)

양도양수원인: 자산양수도계약

양도인(매도인): F 주식회사

양수인(매수인): A 주식회사

다.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)에 관하여 소외 망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.

(2020년 3월 9일 제29877호 접수, 2020년 2월 21일 등기원인(협의분할에 의한 상속))

2. 소외 D의 양수금채무(피보전 채권)

가. 소외 D은 2015년 5월 14일 신청 외 E(주)로부터 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연체가 자율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

나. 소외 D은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대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, 현재 채무자의 채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아 래 -

기준일: 2020년 07월 07일

원금잔액: 금 10,101,170원

인수이자잔액: 금 1,306,659원

합 계: 금 11,407,829원 (인수후이자 제외)

3. 소외 D의 사해행위

가. 위와 같이 소외 D은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(소유권)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C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.

나. 이처럼 채권의 존재 상태에서 소외인이 그 채무변제 이전에 가혹관계가 있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.

4.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취소

가.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소외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신청인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, 이렇듯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.

나. 이처럼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,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소외인이 그 채무변제 이전에 피고의 명의로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기도한 나머지 채권자를 사해함이 분명하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에 의해 위 소외인과 피고 간의 위 부동산에 대한 2020.02.21. 순위번호 15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말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5. 결어

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부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1) 상속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단독신청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대립을 관념할 수 없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상대방 또한 상정할 수 없는 것이나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 2/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이

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주문에는 말소등기절차의 상대방을 D으로 적시하기로 한다.